

서울특별시 영화창작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검 토 보 고

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1165호
- 나. 제 안 자 : 서울특별시장
- 다. 발의일자 : 2019년 10월 16일
- 라. 회부일자 : 2019년 10월 22일

2. 제안이유

- 가. ‘영화창작공간 운영’은 영화창작자의 창작역량 강화를 위한 안정적인 공간과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서울 영상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서울을 한국 영화창작의 중심지로 육성하려는 목적의 사업으로,
- 나.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영화산업 현장에 대한 이해 및 전문지식, 인적·물적 네트워크를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함.
- 다.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적정성 심의 결과, ‘적정’으로 의결되어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사업명: 영화창작공간 운영

나. 위탁기간 : 3년 (2020.1.~2022.12.)

다. 소요예산 : 1,814백만원('20년 예산)

라.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

마. 위탁사무내용

- 영화창작공간 시설 및 장비의 구축 및 유지·보수
- 입주 대상자 모집, 심사 등 입주자 선정·지원
- 입주자 관리 및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·운영
- 영화창작공간의 홍보 및 영화인 네트워크 지원 활동
- 기타 공공 창작지원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등

바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

- 추진근거 : 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 제7조 및 제10조

○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'영화창작공간 운영'은 영화창작자의 창작역량 강화를 위한 안정적인 공간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영상 및 영화산업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바,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영화관련 경험 및 역량이 축적된 전문적인 법인 및 단체에 위탁 운영 필요

4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강상원)

가. 동의안의 개요

- 동의안은 영화 창작자를 위한 공간 제공과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‘영화창작공간’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민간위탁에 앞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.

나. 영화창작공간 운영 현황

- 영화창작공간은 영상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영상 기획·개발 및 제작을 지원하는 시설로, 2008년부터 DMC 첨단산업센터에 조성되어 운영 중에 있음.

<영화창작공간 개요>

- 소재지 : 마포구 상암동 1580번지 첨단산업센터
- 규모 : 전용 4,588㎡(계약면적 7,898㎡)
- 입주대상 : 영화감독·PD 58명, 작가 42명,
영화제작사 12팀(프로덕션 오피스),
영화제작사 5팀(오피스 존)
- 시설개요

구 분	기획개발 공간				제작 공간
	원스톱 지원	일반지원		1인 기업지원	제작실 지원
	2층 (감독존)	1층 (작가존)	8층 (피디존)	2층 (오피스존)	5층 (프로덕션 존)
규 모	1,719.11㎡ (997㎡)	1,146.85㎡ (665㎡)	2,946.11㎡ (1,709㎡)	315.7㎡ (190㎡)	1,770㎡ (1,027㎡)
시 설 구 성	창작실, 세미나실 등	집필실, 자료실 등	기획실, 비즈니스지원 실 등	제작실 등	제작실, 회의실 등

- 서울시는 그 동안 이 사업을 독립영화 활성화 지원사업 등 3개의 사업과 통합하여 일괄 민간위탁하였으나, 영상산업 지원사업의 대상과 성격에 맞춰 각각 분리 위탁하는 것으로 개편되었음(2019.8월).

<영상산업 지원 사업 개편 현황 >

사무명		사무명
	서울촬영 지원 (민간보조)	서울촬영 지원 (민간위탁)
영상산업 지원사업 (민간위탁)	해외영상물 서울 로케이션 마케팅 지원	영화창작공간 운영 (민간위탁)
	영화창작공간 운영	
	서울배경 독립영화 활성화 지원	서울배경 독립영화 활성화 지원 (민간위탁)

- 현재 ‘사단법인 서울영상위원회’가 수탁기관으로 선정돼 영화창작공간을 운영하고 있으며, 감독·PD·작가에게 입주공간을 지원하고 창작지원 프로그램, 시나리오 모니터링, 우수 한국영화 기획개발비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.

<서울영상위원회 개요>

- 설립근거 : 민법 제32조('02. 2. 19.)
- 설립목적 : 국내·외 영화촬영 및 제작지원, 서울 영상산업 관련 사업 추진
- 소재지 : DMC첨단산업센터 내
- 마포구 성암로 330, DMC 첨단산업센터 C동 114호
- 대표 : 이장호(영화감독)
- 조직구성 : 임원 18인 / 1처 6팀 1센터

- 입주공간은 지원대상에 따라 층별로 구분되어 있고(감독존 2층, PD존 8층, 작가존 1층), 입주대상자에게는 창작을 위한 멘토링, 입주자 간 교류 및 네트워크 지원을 비롯해 촬영지원, 해외영상물 서울 로케이션 마케팅 등 다른 영상산업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.

<입주공간 현황>

구 분	기획개발공간		
	원스톱지원	일반지원	
	감독존(2층)	피디존(8층)	작가존(1층)
모집분야	우수한국영화 및 국제공동제작 영화		우수한국영화
모집대상 및 인원	영화감독·프로듀서 54명		영화 시나리오작가 개인 20명 오픈 12명(2M)-별도 개별 10명-별도
	독립영화(감독/프로듀서)4명 이상		
모집형태	정기모집		
입주기간	12개월('19. 4~'20. 3)		
지원사항	공통 ① 영화창작공간 입주 지원 ② 창작강좌 운영 및 소재 개발을 위한 멘토링 지원 ③ 입주자간 교류 및 네트워크 연계 지원 ④ 타 영상사업 연계지원		

- 또한, 전문강좌(영화인 대상, 월 2회), 교양강좌(일반인 대상, 연 2회), 심화전문강좌(입주자와 일반인, 연 6회) 등 대상별 교육을 실시하고, 입주자를 대상으로 융합형 체험강의(연 1회)와 작품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.
- 그 외에도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과 시나리오 단계별로 모니터링을 지원하며, 취약한 기획개발 분야를 활성화하고자 우수 한국영화 기획 개발비 종합공모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.

<기획개발비 종합공모 사업 개요>

- 지원 대상 : 창작공간 입주자에서 전 영화인으로 확대
- 선정 분야 : 감독·PD 대상 → 기획개발비 지원(1인당 1천만원, 총 1억 4천만원)
작가 대상 → 입주공간 제공(10명), 상금 총 8천만원
- 예산(2019년) : 2억 2,800만원

다. 민간위탁의 타당성 여부

- 영화창작공간의 입주대상자 선정과 멘토링, 영화 관련 교육 프로그램, 시나리오 모니터링, 우수 한국영화 기획개발비 종합공모 사업 등은 영화산업과 관련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서울시 직영보다 민간위탁이 더 효율적인 사업방식으로 판단됨.
- 다만, 일반적인 민간위탁 사업과 달리 우수 한국영화 기획개발비 지원 사업은 지원대상을 선정해 금전적으로 보상하고 있어 심사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.
 - 현재 서울영상위원회는 별도의 심사 인력풀없이 임의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사무처장이 심사에 참여하는 등 공정성 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어 개선이 필요함.

- 한편, 「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」에서는 동의안과 예산안은 법령이나 조례 제·개정,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, 의회 동의 과정에서의 보류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, 같은 회기에 동시 상정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, 집행부가 수립한 자체 지침을 준수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.

담당 조사관	연락처
김성만	02-2180-8055

<붙임자료 1>

영화창작공간 운영 2020년 예산안

□ 소요 예산 : 1,814백만원 ※변동 가능

사업비 목		산출근거	금액(천원)
총계			1,814,069
입주자모집 (일반)	입주자 모집	· 씨네21광고1회, 디자인, 매뉴얼 제작	4,000
	심사비	· 196명*10명*5천원, 진행10만*2회	10,000
	입주자 커뮤니티	· 오리엔테이션 1회 진행	2,200
	콘텐츠 구입	· DVD, 도서 등	2,000
	소계		18,200
시설관리 및 운영	임대관리비	· 임대료, 관리비 1, 2, 5, 7, 8층	1,083,000
	공공시설 유지보수	· 유지보수 물품, 집기수리, 환경미화 등	40,000
	사무관리비.공공운영비	· 신문대금, 복합기 렌탈, 사무용품 구입 등	58,900
	회의, 간담회	· 간담회 1회 진행 (6명)	600
	성과분석	· 영화창작공간 성과 분석	5,000
	차량유지, 교통비	· 주차권 구입	1,000
	출장비	· 국내출장2,500천원	2,500
	소계		1,191,000
창작 및 소개 지원	강좌개설 및 진행	· 일반/심화 10,400천원, 견학 1,000천, 진행비 600천원	12,000
	멘토링 지원	· 입주자 멘토 비용 회당 20만원	7,000
	시나리오모니터링	· 모니터링 1회, 10작품, 15,000천원	15,000
	심리치료프로그램	· 40만*2집단*2회, 15명*8만원*2회, 30만*4회, 테스트지 및 교구구입 등 30만	5,500
	소계		39,500
기획개발지 원	기획개발비 지원	· 상/하반기 비즈니스 지원	338,000
	심사비/진행	· 심사 및 기타 진행비	10,000
	소계		348,000
홍보 및 네트워크	홍보/홈페이지 등	· 영화창작공간 홍보, 홈페이지 유지관리, RFID유지, 홍보 기념품 제작 등	10,000
	소계		10,000
일반 운영비	인건비	· 기본급·제수당·퇴직연금·4대보험(4명*12월)	204,369
	소계		204,369
	운영비		3,000
	소계		3,000

<붙임자료 2>

「서울특별시 민간위탁 관리지침」

민간위탁 동의안 제출시기

시의회 동의(주관부서)

○ 시의회 동의 대상

- 동의 대상 : 해당사무의 민간위탁 추진 여부
 - 민간위탁 관련 추진절차(예산안 의결,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, 협약 체결 등)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사전 의회 동의 추진

○ 민간위탁 의회 동의안 제출절차 (시행규칙 §2②)

- 주관부서별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한 의회 동의 추진
- 의안 처리절차는 일반안건 처리절차에 의함
 - 의안 제출 → 접수 및 의안번호 부여 →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→ 상임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심의 → 지방자치단체에 이송
- 안건 제출 서식 : 시행규칙 §2②

예산편성(주관부서)

○ 사전절차 이행 후 예산편성

-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→ 의회동의 → 예산안 의결 의무화
- 사전절차 대상 : 민간위탁조례(제4조의3 등)에 따른 시의회 동의 대상 사무

※ 동의안과 예산안은 같은 회기에 상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나, 법령이나 조례 제·개정,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·의회 동의과정에서의 보류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시에 상정 가능